



TaxNewsFlash - Transfer Pricing

[Website](#) | [Archive](#) | [Contact](#)

Transfer Pricing Newsletter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TP)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NSIGHT: Transfer Pricing in the Covid-19 Crisis—an Exceptional Situation \(April 28th, 2020\)](#)

INSIGHT: 전례 없는 코로나 19 위기 속에서의 이전가격

이전가격 실무 상 경제분석은 현재의 경제적 상황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는 과거의 재무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의 영향은 2020 회계연도("FY2020")의 이전가격 분석 과정에서 특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OECD도 이전가격 분석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비교가능성 조정을 인정하고 있는 바, FY2020의 통상적인 다국적기업 재판매법인의 이전가격 분석 시에는 현 경제위기의 영향을 감안하여 비교가능회사의 FY2019 재무정보에 다음과 같은 비교가능성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적용가능한 4단계 접근방식

- ① 1단계: FY2019 대비 FY2020간 매출 감소분을 비교대상회사의 FY2019 매출에 반영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

May 25th, 2020

KEY CONTACTS



[강길원 본부장\(부대표\)](#)

(Tel: 02-2112-0907)



[백승목 상무이사](#)

(Tel: 02-2112-0982)

- ② 2단계: 매출 감소분의 효과를 반영한 변동비 감소분 시뮬레이션 수행
- ③ 3단계: 비교가능회사의 판매 마진에 대하여 과거 원가분석을 통해 매출 감소분과 관련된 고정비용 조정분의 근사값 도출
- ④ 4단계: 전술한 조정사항을 바탕으로 각 비교가능회사의 조정 후 영업이익 및 사분위범위 계산

상기 조정사항이 경제위기의 유무와 관계없이 시장에서의 주된 경제적 위험은 사업주관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의 "사업주관자" 개념과 상충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코로나19가 야기한 예외적인 경제상황에 대한 설득력 있는 경제적 당위성을 부여하고, 각 지역에 소재하는 다국적기업 관계사의 손익이 정상가격임을 소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최종적으로는 과거 재무 데이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비교가능성 조정과 관계없이, 선형적으로 조정된 결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수행된 조정사항에 대한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FY2020의 비교가능한 재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21년 말 사후적 검토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국적 기업들은 FY2020 마감에 앞서 사례별로 그룹 계열사 상황을 사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해 코로나 위기와 관련된 시장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신뢰성 있는 비교가능성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추후 경제활동이 회복되고 2021년에 "정상적인" 상황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FY2020에 대해 상기 비교가능성 조정을 수행한 다국적 기업들은 2021년 결과에 대해서는 반대되는 성격의 유사 조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COVID-19 Transfer Pricing Implications for Intercompany Loans \(May 4th, 2020\)](#)

코로나19가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차거래에 주는 시사점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차거래에서는 통상적으로 부채상환능력 분석 및 정상 이자율 벤치마킹의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전가격 분석이 수행됩니다. 채권시장 내 불안정성은 특수관계자간 신규 금전대차거래를 평가함에 있어 상기 두 요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경기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유동성 문제로 인하여 기존 채권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장기적이고 불확실한 회복 기로에 직면해 있다는 심리는 채권시장 불안정성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가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며 기업의 수익성 하락과 더불어 과소자본 대차거래에 대한 규제는 이자비용의



김상훈 상무

(Tel: 02-2112-7939)



김태준 상무

(Tel: 02-2112-0696)



윤용준 상무이사

(Tel: 02-2112-0277)

손금산입 여부에 영향을 미쳐 결국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차거래 관련 비용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넘게 지속된 경기회복 기간 동안 투자자들의 회사채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금융위기가 심화된 이후인 2008년에는 EBITDA 부채비율(debt-to-EBITDA)이 6배 이상인 대기업(Leveraged corporates)에 대한 대출 비중이 전체 대기업 대출의 10.7% 수준이었으나 코로나 19 사태 직전인 2019년에는 해당 비율이 33.3%까지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투자자들의 레버리지 한도가 현저하게 감소하였고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촉발되어 2020년 1분기 중 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선순위 대출이 감소하였고 이러한 추세가 2분기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실제 2020년 3월 4일~3월 30일 기간 동안 발행된 채권은 높은 신용등급의 채권에 집중되었습니다.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차거래의 상당 부분이 투자등급 이하의 신용등급 수준으로 발행되는 가운데, 채권 시장에서 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채권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함에 따라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차거래의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조건들로 인하여 현재와 같은 시장혼란 시기에 대출만기에 따른 차환이 필요한 차입법인들은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기 침체 시기에 채무자는 단기차입금을 장기차입금보다 선호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역시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2020년 이전 3개년 동안 고수익 채권의 약 78%는 만기가 5년 이상이었으나 2020년 3월에는 만기가 5년 이상인 고수익 채권은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특정 채권시장 부문의 제약으로 특수관계자간 발행가능한 금전대차거래 유형 역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 차입법인은 이자율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차환을 받지 않을 경우 과세당국은 고정이자율의 정상가격 여부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며, 차환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차입법인의 행정적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차거래에 변동 이자율을 적용하거나, 채무자들이 불확실한 현금흐름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자지급 시 추가적인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payment-in-kind)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효과는 정상 이자율 산정 시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한편, 미국 이전가격 규정은 "비정상적인 시장 상황에서 공공거래소 등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의 사용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현재의 비정상적인 금융시장 환경에서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 이자율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시장 데이터의 가용성 및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 이자율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주의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개별 시장에서의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최소한 현 상황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분적인 수정이 가능한 시장지수를 사용하여 조정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과세당국이 현재의 이자율 변동성은 납세자가 이자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간 채권 발행일을 취사선택하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자금조달의 사업목적을 뒷받침하는 이사회 회의록 및 내부 보고서 등 충분한 소명자료를 갖추고 채권 발행일자를 미리 지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현 상황에서 다수의 차입법인들은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이자비용이나 원금을 지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자 지급 일정을 연기하기 위해 현행 계약조건을 조정하거나 계약을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이자율이나 지급시기의 변경에 따른 부채의 조정은 세무상 손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채권 이자율 및 지급조건 등을 조정하기 전 잠재적인 세금 혜택을 고려하여 변경사항이 기존 계약조건과 일관되는지 혹은 세무 목적상 유의적인 변경인지 여부를 사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는 금리 변동성 확대, 부채조달 감소 등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차거래를 수행하거나 기존 계약을 수정할 때에는 해당 자금조달이 부채로 인식되고 관련 이자비용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 기사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곳](#)을 참고하십시오.

[Pandemic Delays Global Agreement on Digital Tax to Fall \(May 5th, 2020\)](#)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디지털세 협의 일정 연기

현재 OECD는 소비지국에서 (특히 기술 기반)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권 행사 관련 전세계적인 세제 개편을 위해 140여개 국가 간 합의를 도출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OECD는 7월에 예정되었던 디지털세에 관한 글로벌 협의는 10월 중 대면 혹은 가상회의를 통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다국적 기업 소득의 국가별 배분을 단순화하고 재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Pillar One 일부 규정 등 디지털세 도입과 관련된 세부규정은 2021년에 결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OECD의 디지털세 재편과 관련된 글로벌 협상 과정의 주요 논제 중 하나는 디지털 경제를 주요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의 문제이며, 디지털 경제에 집중하는 데 반대하는 입장인 미·중과는 대조적으로, Pillar One의 Amount A 금액은 디지털 경제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간 상반되는 쟁점은 (1) Pillar One의 일부를 디지털 기업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여부, (2) 다국적 기업이 사업을 수행하는 나라마다 글로벌 최저세율인 Pillar Two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러한 이견이 어떻게

좁혀질지는 분명하지 않으며,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국가간 타협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보기술산업협회(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Council)는 다자간 해결책에 도달하기 위해 진행사항이 진전될 것으로 확신한다는 입장이지만 일정 연기를 요구하는 단체도 있는 상황에서 국제적 합의가 결렬되거나 장기간 지연된다면, 일방적 디지털세를 도입하는 국가가 늘어나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별국가의 일방적 도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국제적 합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Back to top](#)

[Privacy](#) | [Legal](#)

INTERNAL USE ONLY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0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kpmg.com/socialmedia



kpmg.com/app

